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간의 업무협약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이하 함께 지칭될 경우 “양 기관”이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실시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 우호 증진 및 개도국 대상 EDCF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양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한다.

1. 지원사업의 개발, 조사, 사업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협력
2.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3. EDCF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협력
4.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5.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공동 조사 또는 연구
6. 국내외 조직망 및 시설의 이용협조 등

제3조(개발, 조사, 사업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협력)

양 기관은 지원사업의 신규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또는 기 실시된 조사결과의 검토 및 보완, 사전심사,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제4조(EDCF 지원)

- 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사업에 대해 EDCF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착수 전에 은행에 사전 협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를 받은 은행은 정부와 지원여부를 협의한다.
- ③ 은행은 정부가 EDCF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개도국이 차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협력)

- ① 은행은 EDCF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협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이 불충분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협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정보 및 자료교환)

양 기관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추진에 필요한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공동 조사·연구)

양 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 산업분야의 조사 및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8조(국내외 조직망 및 시설이용 협조)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국내외 조직망, 시설물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상호 협조한다.

제10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 및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약정)

양 기관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의 상세한 범위, 방법 및 절차와 비용지급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양 기관 간 협약의 시행과 관련되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효력 및 해지 또는 내용변경)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② 양 기관은 협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고, 일방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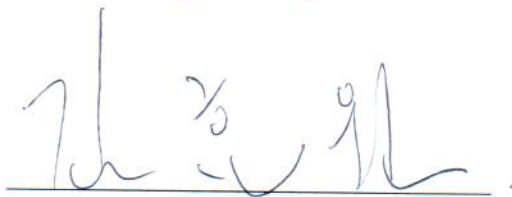
2009년 6월 11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해외건설협회

전무이사

김효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권영국

